30.>

##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/ 접수번호	나항 • 작성방 -	법을 읽고 작성	하시기 바리 접수일시	<b>나며</b>	, 색상이 어두운 란음		l 작성하지 처리기간	않습	니다. 15일		( 앞쪽)
	성명(법인	명(법인명)			국적	주민등록	록번호(법	인•		등록반	[호)
①매도인	주소(법인				(휴대)전	전화번호					
②매수인	성명(법인			국적	주민등록	록번호(법	인•	외국인	등록반	[호)	
	주소(법인				(휴대)전	전화번호					
③기존 허가번호		제 호									
<u> </u>		⑤변경 세-	부 항목		⑥기존 허기	나내용		⑦ 년	변경 호	·  가내	용
[ ]이전/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											
[ ]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											
⑧변경의 사유							,				
제9조제3항어	∥ 따라 위의	와 같이 변경	허가를 イ	신칭	영합니다.						
					o!	도인			년	<b>월</b> (서명	<b>일</b> ! 또는 인)
						'  수인					! 또는 인)
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											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이용계획서 (「농지법」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합니다) 2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 금조달계획서									8조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 인사항	토지거래겨	약허가서, 토지	등기사항·	증명	1서						

## 유의사항

- 1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.
- 2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3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.
- ※ 허가 신청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## 작성방법

- ① ② "매도인"•"매수인"란에는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- ③ "기존 허가번호"란에는 기존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.
- ④ "변경 사항"란에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참고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에 √표시합니다.
- ⑤ "변경 세부 항목"란에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참고하여 변경허가 대상인 세부항목을 적습니다(변경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).
- ⑥ "기존 허가내용"란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존 허가 내용을 적습니다(변경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).
- ① "변경 허가내용"란에는 변경 내용을 적습니다(변경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).
- ⑧ "변경의 사유"란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유를 적습니다.

## 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